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-214호

「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19년 5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 「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용조문 변경 및 위임규정 신설 등에 따라, 창투사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기관 지정, 창업제외업종 개편에 따른 기존 조문 및 산업재산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인정 경력기관 지정(안 제4조)
  - 1) (현황) 창투사의 전문인력 요건에 투자업계·산업계 경력을 추가하는 창업법 시행령이 개정
  - 2) (개정내용) 투자관련 경력 인정기관에 벤처펀드 운용사로 지정하고, 산업계 경력 인정기관에 기업과 연구기관으로 규정
  - 3) (기대효과) VC 임직원 중 3년 이상 경력 보유자가 창업투자회사 전문 인력으로 유입 기대

- 나. 창업투자회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정의 규정 정비 (안 제6조제5항)
  - 1) (현황 및 내용) 최근 창업지원법령 개정으로 전체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계획('19.6월 시행)으로 변경된 인용조문에 따라 기존 핀테크 투자를 위한 정의 조문이 불필요하여 관련 규정 삭제
- 다. 국내기업이 소유한 국외 특허권 창업투자회사 투자 허용(안 제7조의2)
  - 1) (현황) 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 IP에 대한 창투사 투자 규정이 부재
- 2) (개정내용) 중소기업 등이 개발·제작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규정을 명확화
- 3) (기대효과)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 산업재산권 투자를 허용하여 해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IP 투자에 대한 수익 극대화 기대
- 라. 창업투자조합 해산 관련 규정정비(안 제7조의2)
- 1) (현황) 법제처 행정규칙 사후심사 개선의견에 따라 창업투자조합 해산 관련 조문을 수정 필요
- 2) (개정내용)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사후 해산내용 제출의 의미가 포함될수 있도록 인용조문 및 조합 해산시점 표현을 수정

#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  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  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    - 일반우편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1동 11층 투자회수관리과
    - 전자우편 : ok5452@korea.kr
    - 팩스 : 042-489-9693

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(전화 (042) 481-4420, 팩스 042-489-969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